

英美目錄規則

第6章의 改訂規則과 前規則과의 變更事項 比較檢討

韓 淳 晶*

序 論

1967년에 出版된 英美目錄規則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 以下 AACR로 略稱)은 1949년에 出版된 美国圖書館協會의 著者 및 書名記入 目錄規則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의 2版과 同年에 出版된 美議會圖書館의 記述目錄規則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 以下 LC規則으로 略稱)을 한편으로 改訂 統合한 것으로, 이중 第II部인 記述에 관한 規則은 LC規則을 改訂한 것이다. 그러나 1974년에는 AACR의 第II部中の 第6章에 관한 規則을 다시금 同年에 出版된 國際標準書誌記述: 單行本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 以下 ISBD(M)라 略稱)¹⁾에 使用된 句讀點을 제시하여 여러 事項에 걸친 變更點을 適用하기 위해서 改訂하였으며 또한 AACR의 前規則을 再構成하여 보다 簡潔하고 明確하게 說明하여, 이것을 別個의 單行本으로 出版하게 된 것이다.

* 淑明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1) 이에 關한 詳細한 것은 國際圖書館協會聯盟, 國際標準書誌記述法(單行本用) - 國際書記(單) - ISBD(M)/國際圖書館協會聯盟 制定. - 標準 1版 / 李載喆, 玄圭燮 譯註. -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6. 參照

1974년에 AACR 第6章의 改訂版이 出版된 以後 우리나라 圖書館에서 는 아직까지 改訂된 規則이 圖書館目錄에 거의 適用되어 있지 않는 實情이 어서, 이를 이미 使用하고 있는 目錄에 適切히 統合시키려면 우선 改訂版에서 前規則이 어떻게 變更 되었는지 理解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이 論文의 目的은 (1) 改訂된 AACR 第6章 單行本の 目錄規則에서 變更 또는 追加 改訂된 事項들을 AACR의 前規則과 比較 檢討하여 이를 說明하여서 圖書館 實務者의 目錄作成에 도움이 되게 하며, (2) 改訂된 規則의 實際 目錄上의 適用 및 統合에 따르는 問題點을 檢討하는 데 있다.

이 論文은 3部로 構成된 것으로, 첫째 部分에서는 改訂된 規則을 理解하는데 필요한 改訂版의 附錄을 檢討하였으며, 둘째 部分에서는 一般規則의 7個範圍(Area)를, 그리고 셋째 部分에서는 特殊規則을, 각각 規則番号에 따라 다루었다. 여기서 使用한 AACR 第6章 改訂版은 美國圖書館協會에서 發行한 北美版(North American Text)를 使用하였으며, 본 論文에 적합한 規則番号는 改訂된 規則을 말하며, 이에 該當하는 前規則을 괄호 안에 明示했다. 例文은 가능한 한 AACR과 改訂된 規則 第6章의 本文에서 引用 했다.

I. 附錄 (Appendix)

AACR 第6章의 改訂된 規則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우선 改訂에 必要的한 改訂版의 附錄 I, III, V를 檢討하는 것이 重要하다. 附錄 I은 用語解說에 관한 것이고, 附錄 III은 略語, 그리고 附錄 V는 句讀點과 符號에 관한 것이다.

1. 附錄 I. 用語解說

우선 用語解說中の 新用語를 먼저 檢討하고 改訂된 用語를 改訂 以前의 用語와 比較해 보고자 한다.

A. 新用語

a. 範圍(Area)란 目錄記入의 主要部分(main section)으로서, 이것은 規則130A에 의하면 書名에서 始作하여 國際標準圖書番号(ISBN)에 이르기까지 7個範圍로 構成되어 있다(下記Ⅱ, 1. 規則130 參照). b. 要素(Element)란 目錄記入 範圍의 細分(sub-section)로, 7個範圍中 첫번째 範圍인 書名·著者 表示範圍(The title and statement of authorship area)의 書名에만 관한 要素의 예를 들어보면 對等書名(Parallel titles)(規則134C1), 其他書名(Other titles)(規則134C4 a와 134C4 b), 그리고 其他書名情報(Other title information)(規則134C4 c)의 세 가지로서, 이들은 괄호안에 明示된 規則番号에서 各各 詳細하게 다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생략 하겠다. c. 圖表(Graph)란 目錄記述의 挿圖表示 種類中的 하나로 새로 追加 定義되었다(規則141D1a 參照). d. 序頭部(Preliminaries)란 間紙書名(Half title), 副標題紙(Added title page), 標題紙의 裏面(Verso of the title), 表紙(Cover) 및 책등(Spine)을 포함한 것으로 記述에 必要한 情報의 原出處를 提供해 주는 매우 重要한 部分이다. e. 副叢書(Subseries)란 改訂版의 用語解説대로 書名이 不分明하고 다른 叢書名에 從屬된 叢書라는 것을 명백히 해 주기 위해 追加된 新用語다(規則142參照).

B. 改訂用語

a. 副標題紙(Added title page)의 用語解説에는 影印本(Facsimile edition)이나 再刷版(Reprint edition)의 경우, 原標題紙는 副標題紙로 取扱하지 않는다는 것을 追加시켰다. b. 影印本(Facsimile edition)이란 著書의 原形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을 強調하기 위해 使用된 改訂用語이다. c. 單行本(Monograph)의 定義에는 어떤 著書의 單行本의 可否를 決定하는데는 体裁(Format)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追加되었다. d. 書名(Title)에 관한 定義는 前規則보다 細分되어서, 어떤 著書의 주된 名稱은 本書名(Title proper)(規則134B 參照)이고 나머지는 其他書名(Other title)

으로 区分되었다. e. 圖版(Plate)은 改訂版에서 “插圖類를 収録하고 있는 張”이라고 定義하므로서 插圖類에서 이를 除去하여 페이지 事項의 一部로 옮겼다(規則141 Bld 參照).

2. 附錄Ⅲ. 略語

附錄Ⅲ의 略語에는 添加 및 改訂된 略語가 収録되어 있다. 이 中 省略된 몇개의 項目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學位論文(Dissertation=diss.)과 就任論文(Inaugural dissertation =Inaug. Diss.)은 規則146에서 전부 Thesis로 代置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省略되어 있다. b. 卷頭畫(Frontispiece, -s=front., fronts)는 規則141 Bld에서 圖版(Plate)으로 取扱된 관계로 不必要하게 되어 여기서는 削除되었다. c. 張(Leaf, leaves=l)은 規則141B에서 略字를 쓰지 않고 그대로 使用하기 때문에 省略되었다. d. 出版年代無(no date of publication =n. d.)表示는 改訂版에서 “n. d.” 대신 어림年代(approximate date)를 使用하게 되므로 省略되었다. 改訂된 項目中 e. 出版地無(no place of publication)表示는 規則137A에 의해 從前의 “n. p.”에서 “sine loco”의 略字(s. l.)를 括弧속에 表示했고, 이와 더불어 f. 出版社無(no publisher)表示는 規則138A에 의해 “sine nomine”의 略字(s. n.)를 역시 괄弧속에 넣어 使用하는 새로운 項目으로 追加되었다. g. 插圖類(Illustration)와 插圖者(Illustrator)의 略字는 規則141 D1a에 의해 “illus.”에서 “ill.”로 短縮되었다. h. 接續詞“and”의 略語(ampersand=&)는 前規則에서는 統一書名의 言語 또는 樂器을 記入할 때만 使用하였으나, 改訂版에서는 對照事項範圍에서 同伴資料의 記述과 크기를 나타내는 事項을 区分하는 데도 使用했다(規則141F參照).

3. 附錄V. 句讀點과 符號

이 章에서는 改訂版의 削除 및 改訂된 用語를 中心으로 前規則과 比較 檢討하고자 한다. 改訂版 附錄에서 目錄記入의 各 範圍와 各 範圍의 個別 要素는 ISBD에서 規定한 句讀點 記号에 의하여 分離 되었으며, 句讀點의

一般規則은 規則131에 言及되어 있고, 細則은 第6章의 該當 規則에서 다루어진 것을 参照 하도록 明示되어 있다.

附錄V의 句讀點에 관한 特定한 實例를 살펴보면, a. 角括弧(Brackets)는 前規則에서는 標題紙나 그것의 代用物 以外에서 나온 記入體(Body of entry)의 data와 著書外에서 나온 叢書表示事項이나 그 一部를 記入할 때 使用하도록 되었으나, 改訂版에서는 이 두 項目을 附錄에서 削除한 代身 前者는 規則132B에서 그리고 後者는 規則142A1에서 各各 다루어 졌다. b. 콤마(Comma)는 標目(Heading)에서 주로 使用하는 것으로, 規則131과 136B 2 a에 記入의 公式的 使用法이 規定되어 있다. 前規則中에서 콤마는 書名을 著者事項으로부터 区分하며 또한 書名의 主要部分과 從屬部分을 区分하기 위해서 使用 되었으나, 이 規定은 改訂版에서는 削除 되었으며, 콤마와 角括弧를 並行하여 쓸 경우 콤마를 省略하는 規定도 또한 改訂版에서 省略되었다. c. 省略符號(Ellipses)는 改訂版 附錄V에서 削除 되었으나, 規則134B 2에서는 前規則과 마찬가지로 書名을 省略할 경우에 使用한다고 規定하였으며, 規則134D 7에서는 3名 以上の 著者를 著者事項에서 省略할 境遇에도 省略符號를 使用 한다는 規定이 添加되었다. d. 疑問符號(Interrogation point)는 改訂版에서는 “Question mark”라고 改稱하였을 뿐 用語의 定義는 變하지 않았다. e. 符號(Diacritics)에 관한 規定에서 頭字(initials)나 佛語의 大文字E를 제외한 기타 大文字에는 符號를 붙이지 않는다는 文章이 改訂版에서 削除된 것은, 頭字나 大文字 符號를 붙이는 問題는 各 言語의 一般的인 用法에 準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 一般規則(General rules)

1. 一般規則에 앞서 言及해 두고싶은 것은 單行本의 序論註記(Introductory notes)에서 美議會圖書館(Library of Congress=L. C.)의 目錄政策을 前規則의 本文에서 脚註로 옮겨 說明하고 있다. 이와같이 改訂版에서는 全6章을 통하여 該當規則에 L. C.의 目錄作成 實例를 脚註에

追加한 것은 主要한 變化라고 볼 수 있다.

「規則130(前規則130)」. 이 規則은 記述의 組織에 관한 것으로, 7範圍로 構成된 目錄記入의 記述要素는 다음과 같다. 1. 書名·著者·範圍表示(Title and statement of authorship area), 2. 版次範圍(Edition area), 3. 出版範圍(Imprint area), 4. 對照範圍(Collation area), 5. 叢書範圍(Series area), 6. 註記範圍(Note area), 7. 國際標準圖書番号範圍(ISBN area). 이와같이 目錄記入에 있어서 書名부터 出版事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部分을 記述의 基本部分이라고 한 前規則 130A의 記入體(body of the entry)의 範圍를 改訂版에서는 7個項目으로 넓혀 範圍(Area)라는 새로운 用語를 使用했다. 그러나 改訂版 p. 3의 脚註에서는 L.C.의 实例를 들어 目錄記入의 記述要素를 一連의 節(Paragraph)로 表現하였는데, 그중 첫번째 節은 範圍1-3까지를 다루었으며 그것을 記入體라고 불렀다. 둘째 節은 對照와 叢書範圍로 構成되어 있으며, 註記(Notes)는 必要에 따라 여러개의 節로 나타낼 수 있으며, ISBN表示의 分離된 節이 뒤따른다고 했다. 規則130B에서는 必要에 따라 插圖表示(Illustration statement)와 卷号(number of volumes)를 著者と 出版事項 사이에 記入할 수 있다고 했다. 改訂版에서 以上の 各要素들은 範圍 다음 括弧속에 表示된 規則番号에서 더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

「規則131」. 改訂版의 가장 顯著한 變化는 句讀點 問題이다. 目錄記入의 各範圍는 다음 範圍가 새로운 節로 시작하지 않는 한 終止符(period), 빈칸(space), 대시(dash)²⁾, 빈칸(. --)으로 区分된다. 各範圍内の 個別要素는 콤마(,), 세미콜론(;), 콜론(:), 等線(equal sign=) 그리고 斜線(slash /)등의 所定の 句讀點으로 識別하나, 콤마를 除外한 다른 句讀點은 양쪽에 빈칸을 두어 使用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콜론, 等線 및 斜線은 目錄記入에서 各要素를 区分하는 以外の 場所에서는 양쪽에 빈칸없이 쓰여진 境遇에만 使用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다. 各要素에 使用하는 所定の 句讀點은 이에 관한 規則에서 자세히 다루어 졌으므로 여기서

2) 대쉬(dash)는 打字로 찍을 境遇에는 두개의 하이픈(hyphen: --)으로 表示한다.

는 省略 하겠으나, 所定の 句読點은 그것이 重複된 것이라 한지라도 指定된 곳에 적도록 規定되어 있다.

「規則132(前規則 131): 記述의 出處(Source of description)」. 規則132 B 에는 規則 130에서 열거한 7個 範圍中 参照 및 註記範圍를 除外한 5個 範圍에 대한 記述에 必要한 情報의 原出處(Primary sources)를 우선 順位로 記入되어 있다. 만일 目録記入에 必要한 情報을 原出處에서 얻을 수 없어서 他出處에 의거할 경우, 他出處 情報은 角括弧속에 表示한다고 規定한 改訂된 規則은 그만큼 情報의 原出處가 目録記入에 重要한 原泉이 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또한 改訂된 規則에 의하면 한쌍의 角括弧는 目録記入에서 同範圍內의 隣接한 插入된 要素에도 使用하며(例: [London: Midgely, 1973], 隣接한 插入된 要素가 다른 範圍로 構成된 경우에는 各 範圍內의 要素는 各各 다른 한쌍의 角括弧 속에 記載해야 한다고 規定하였다(例: [1. ed.]. — [Paris] : Desclée, De Brouwer, [1973]) 이와같이 改訂된 規則에서는 前規則라 달리 二重 句読點의 使用을 許容하고 있다.

「規則133(前規則132): 한 著書의 標題紙와 記述과의 關係(Relationship of the title page to the description of a work)」. 前規則에서 標題紙는 記入체에 提供되는 記述의 基本으로서 使用된다고 明示되어 있다.³⁾ 그러나 改訂版에서는 記入체라는 用語는 規則130의 本文에서 目録記入의 主要部分中 参照事項 前範圍들로 바뀌어 졌고, 이들 3個範圍의 記述의 根拠가 되는 項目에는 規則132B에 의하면 標題紙 뿐만 아니라 다른 基本出處의 data도 追加되었다. 前規則은 標題紙의 여러 要素들이 反復되지 않고 對面페이지(two facing pages)에 적혔을 경우, 兩面 페이지는 一面標題처럼 取扱되므로 여기서 나온 情報은 角括弧없이 記述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角括弧없이 記入 할 수 있는 情報의 出處範圍를 對面페이지 뿐만 아니라 連續페이지나 張까지도 包含시켰다. 規則133A 1에 追加된 項目은 標題紙에 한번 나타난 글자나 單語가 한번 以上 記入에 使用될 경우 두번

3)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prepar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et al.] - North American text. -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P. 192.

使用된 글자나 單語를 角括弧 없이 쓰는 規則에 관한 것이다. (例, 標題紙: Canadian BIBLIOGRAPHIES Canadiennes. 記入: Canadian bibliographies = Bibliographies canadiennes). 略語 “et al.”은 前規則에서는 標題紙가 알파벳으로 쓰인 外國著作에만 사용되었고, 標題紙가 英語로 된 著書에는 “and others”라는 用語를 사용했으나, 改訂版에서는 言語나 文字와 關係 없이 모든 著書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略語 “etc.” “i. e.” 및 “et al.”을 除外한 附加語는 標題紙의 言語, 文字 또는 特定的인 要素에 따라 사용하도록 規定되었다. 「規則133A4」는 標題紙에 對等書名이나 副書명이 여러 言語나 文字로 되어 있는 著書일 경우, 記述에 必要한 이들 書名の 數는 規則 134C1에 의해 決定된다고 提示하였지만, 그 著書의 다른 目錄記入 要素가 여러 言語나 文字로 되어 있으면 本書名の 言語나 文字로만 記錄된다는 規定이 添加되었다. 「規則133C2d」는 追加된 規則으로 새 標題紙와 原標題紙의 複写된 標題紙가 있는 影印本과 再刷版(Reprint edition)의 경우, 새 標題紙를 優先적으로 取扱하도록 되어 있다.

2. 書名·著者表示範圍 (Title and statement of authorship area).

「規則134(前規則133)」은 새로 改訂된 書名·著者表示範圍의 句讀點에 관한 것으로 目錄者를 위해 改訂版 p. 15에 이의 예를 들어 놓았으므로 여기서는 省略하겠다.

「規則 134 B (前規則 133 A): 本書名の 改書(Transcription of the title proper)」。改訂版의 一般規則(規則134B1)에서는 本書名을 記述할 때 1500年 以後에 印刷된 著書는 그 當代 사용된 特異한 印刷文字를 無視하고 이를 現代 로마文字로 代置한다고 했으나, 前規則에는 이 事項에 該當하는 年代를 19世紀와 20世紀의 著者에 限定시켰다. 詩作의 書名の 行末(line endings)을 表示하거나 또는 稀貴本의 2版(2 editions or issues)를 識別하기 위해서 改訂된 規則에서는 이를 빈칸 없이 2個의 斜線으로 表示하고 있다. 「規則134B3」은 書名中の 著者名(author's name in title)

에 관한 追加된 規則으로, 本書名에 著者表示나 出版社名이 包含되었을 때 言語上으로도나 또는 다른 理由로 包含된 著者名이 本書名에 對해 必要하다고 看做될 경우에는 그것을 本書名에 그대로 記入한다고 規定했다 (例, Marlowe's Plays). 또한 脚註6에 의하면 이와같은 規則은 對等書名, 其他書名 및 其他書名 情報에 나타날 境遇에도 適用된다고 했다. 「規則134 B 4 (前規則133 E)」은 附加(Additions) 事項으로 로마字를 使用하는 外國語로 쓰인 書名이 숫자나 略字로 시작하거나 또는 숫자나 略字가 包含되어 있을 경우, 前規則에 의하면 이들 숫자 또는 略字에 該當하는 單語를 補充한다고만 했으나, 改訂된 規則에 의하면 이들 숫자나 單語를 補充할 때는 慣用法에 준하여 補充한다고 덧붙였다(例: 100 {i. e. Hundert}...).

「規則134 C (前規則 133 C) : 對等書名, 其他書名 및 其他書名情報의 改書(Transcription of parallel titles, other titles and other title information)」. 「規則 134C 1 (前規則 133C 1)」은 對等書名(Parallel titles)에 관한 規則으로, 前規則은 標題紙에 2個語 또는 2個語 以上으로된 書名으로 쓰인 著書인 경우 그 첫번 書名을 目錄에 記入한다고 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標題紙에 2個의 對等書名이 있을 경우 그중 하나가 中國, 日本 및 韓國語로 되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2個의 對等書名을 모두 目錄에 記入하고, 또한 標題紙에 2個 以上の 對等書名이 表示되어 있을 경우에는 書名중 한개가 中國, 日本 및 韓國語로 表示되어 있지 않는 한 첫번째 書名과 繼續되는 英語書名을 記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標題紙가 2個 以上の 對等書名으로 되었을 경우 첫번째의 對等書名이 非 Roma 文字로 쓰여졌고 繼續되는 書名이 英語가 아닌 경우, Roma alphabet으로 쓰여진 書名 중에서 이 規則에 明示된 言語의 順으로 選擇하여 記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脚註에서는 國家目錄機關은 自國出版物에 대해서는 모든 對等書名을 記入할 것을 덧붙였다. 「規則134C 2 : 原書名(Original titles)」. 이것은 原書名이 다른 書名으로 出版된 版(edition)의 標題紙에 적혀 있을 경우 그 原書名을 對等書名으로 記入한다는 새로 追加된 規則이다. 「規則 134C 3 (前規則 133D) : Roma 字化 한 書名(Titles in romanization)」. 非 Roma 字를 使用하는 言語로 된 著書의 標題

紙에 Roma字化 한 書名도 包含된 경우 兩書名을 記述할 때, 改訂된 規則에서는 양쪽에 한칸씩 빈칸을 둔 等線을 使用한다는 規定이 덧붙여 있다. 「規則 134C 4 : 其他書名 및 其他書名情報(Other title and other title information)」. 이 規則에는 本書名 및 對等書名 以外の 書名을 總括하여 其他書名이라는 新用語로 使用되었으며, 또한 其他書名을 記入하는 順序에 대한 規定이 明示되어 있다. 書頭의 叢書表示事項내지 他資料에 대해 改訂된 規則에서는 이를 其他書名이나 其他書名情報의 範疇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解釋하지 않도록 注意를 喚起시키고 있다. 「規則134C4C」의 其他書名情報에 관한 規則은 副書名과 別書名으로 看做 할 수 없는 標題紙에 있는 句들이 그 著作의 特性, 一般的인 內容, 出版動機 및 原因을 나타내는 情報면 註記에 記入하지 않고 對等書名과 其他書名 다음에 記入한다는 새로운 規則이다. 새로 規定된 「規則 134C 5」와 規則「134C6」에서는 綜合書名과 著書內의 個別著書의 書名이 標題紙에 表示된 著書의 本書名은 綜合書名으로 記入하고, 個別著書의 書名은 內容註記에 記入하는 한편 個別著書의 合集으로 된 著書中 標題紙에 綜合書名이 없고 個別著書의 書名만 있는 경우, 個別著書의 書名은 標題紙에 表示된 順序나 活字體에 따라 所定의 句讀點을 써서 記入하는 規則이다.

「規則 134D(前規則 134) : 著者表示(Statement of authorship)」. 改訂된 規則의 序文(Preliminary note) 에서는 著者表示에 包含되는 範圍가 規定되어 있다. 즉, 個人이나 團體著者名 以外에 編輯者, 訳者, 序文筆者 및 挿圖者 등의 副次的인 著者名表示事項이 이에 包含되어 있다. 改訂된 「規則 134D 1(前規則 134A, B)」에 의하면 著書에 나타나는 正式 著者表示은 標題紙나 또는 著書內의 다른 곳에 적힌 用語대로 記入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標題紙에 著者表示가 書名要素 다음에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必要한 位置로 바꾸어 記入한다는 規定은 變更되지 않았으나, 前規則 134B 에 明示된 두가지의 예외가 新規則에서는 削除되었다. 또한 改訂된 規則에서는 標題紙 以外の 著書內의 資料에서 얻은 著者表示은 規定된 位置에 角括弧를 使用하여 記入하나, 著書 밖의 資料에서 얻은 著者表示은 必要한 것이면 註記에 記入하며, 規則132B에 規定한 原出處에 나타나지 않은 補

助著者表示는 특별히 重要한 것만 記入한다고 덧붙여 있다. 標題에 記入된 이름形式이 著者表示의 이름形式과 같을 때는 著者表示를 省略한다는 前規則 134A는 改訂版 脚註 8에 兩者択一の 規則의 一部分으로 提示되어 있다. 「規則 134D 2」에는 標題紙에 1個國語 以上으로 著者表示가 되었을 경우에 本書名의 言語로 된 著者表示를 書名要素 다음에 記入한다는 規則이 添加되었다. 새로 添加된 「規則 134D 4」에는 著者名이 書名要素와 文法的인 关联性이 없는 경우에는 著者表示를 바로 앞의 要素와 斜線으로(앞뒤에 간격씩 남기고) 分離하여 記入한다고 規定하므로서 前規則처럼 目錄記入에 [by], [par] 등과 같은 前置詞를 사용치 않게 되었다(規則 134D 9 參照). 「規則 134D 5」로 補助著者를 포함한 여러 著者를 記入하는 方法을 規定해 놓은 規則으로, 記入順序는 標題紙에 적힌 順序나 印刷의 体制(typography)에 表示된 대로 하며, 또한 著書에 參與한 編輯者, 插畫家 등의 寄稿者들을 機能에 따라 記入해서 分離하는 方法을 提示하고 있는데, 同一機能의 寄稿者名은 콤마로서, 그리고 他機能의 寄稿者名은 세마콜론으로(앞뒤 한 칸씩 남겨) 記入하도록 規定되었다. 「規則 134D 6」은 補助資料에 關聯된 表示에 관한 것으로, 補助資料를 準備한 著者名이 標題紙에 적혀 있다면 그 著者名을 著者表示事項에 記入한다는 새로 添加된 規則이다. 「規則 134D 7(前規則 134D)」에는 3人 以上の 著者를 記入하는 方法에 관한 規則으로 同一한 機能을 遂行하는 3人 以上の 著者나 또는 3人 以上の 補助著者를 記入할 때는 著書의 言語와 文字에 關係없이 첫번째 著者 以外는 省略符호인 3点으로서 省略한 다음 “et al.”이라는 句를 角括弧 안에 使用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이에 대해 前規則에서는 省略符호를 使用치 않고 標題紙가 英語로 된 著書이면 “and others”라는 句를 使用했으며, 標題紙가 英語 以外의 外國으로 된 著書이면 前規則 134D에 明示된 言語에 관한 例外規則을 除外하고는 “et al.”이라는 句로서 省略을 表示했으나, 新規則에서는 言語나 文字에 關係없이 “et al.”로 統一시켜 使用하므로서 目錄을 簡素化시켰다고 볼 수 있다. 「規則 134D 8(前規則 134E) : 著者表示에서의 省略(Omissions from the author statement)」에서 稱號 및 敬稱 등을 著者表示에서 省略하는 規則의 例外中 「規則 134D 8a 2」에는 名稱을 省略하

므로 著者の 性만을 남기지 않도록 追加된 規則이다(例: By Dr. Johnson). 「規則 134D 9 (前規則 134F): 著者表示에 대한 添加(Additions to the author statement)」. 規則 134D9a와 前規則 134F 1을 比較해 보면, 後者는 著者表示事項을 記入할 때 標題紙의 著者名 順序나 不明確하고 誤解하기 쉬운 事項을 明白히 하기 위해 書名과 같은 言語로 된 單語나 句를 添加한다는 原則에 있어서는 前者와 같으나, 前者에는 個人著者表示인 경우에만 이 規則을 適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著者名을 書名要素에 連結시키기 위한 前置詞(規則 134D 4 參照)와 2人내지 3人의 마지막 著者名 앞에 “and”나 “et”와 같은 接統詞를 使用치 않는 점이 前規則과 다르다. 「規則 134D9b」는 著者表示에서 使用된 著者名이 基本記入 標目에서 使用된 著者名과 同人인지가 分明치 않을 경우 著者表示 다음에 角括弧 안에 “i. e.”를 쓴 다음 基本記入標目으로 使用된 著者名(이름만 略字로 씀)을 記入하므로 兩名間 關係를 明確하게 해 주기 위해 規定된 新規則이다.

3. 版次範圍 (Edition area)

「規則 135(前規則 135)」는 版次範圍에 관한 規則으로, 前規則 135A에서는 한 著書의 版次表示는 目錄에 언제나 記入한다고 되어 있으나, 改訂된 規則 135A에서는 한 著書의 版次書示 뿐만 아니라 著書의 特定版에만 關係되는 著者表示도 항상 目錄記入에 包含시킨다고 덧붙여 있다. 그리고 再刷(impression) 혹은 復刊(printing)에 관한 表示는 前規則에서는 書誌적으로 重要な 項目만 記入에 包含시켰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修正 혹은 改訂되었을 경우에도 記入한다는 規定이 添加되어 있다. 「規則 135B」는 版次範圍에 使用하는 句讀點을 詳細하게 다룬 新規則이다. 「規則 135C(前規則 135A)」는 版次表示를 記入 하는 樣式에 對한 規定으로, 著書의 版次表示나 著者表示가 1個語 以上の 言語나 文字로 되어 있을 境遇에는 本書名에 表示된 것을 記入해야 하며, 한 著書의 標題紙에 2個 혹은 2個 以上の 著書名이 版次表示되어 있을 境遇에 版次表示에 書名 다음에 오는 著者範圍나 또는 그들이 該當하는 著書名の 書名 및 著者表示 다음에 所定の

句読点을 使用하여 記入하도록 添加되어 있다. 또한 「新規則 135D」에서는 該當 版本에만 關係가 있는 補助著者를 包含한 모든 著者의 著者表示는 版次表示 다음에 記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이들 關係에 疑問이 있을 때는 版次表示를 그 著書의 著者表示의 一部分으로 記入 하며, 著者名과 版次의 關係에 對해서는 規則 134D를 參照하도록 되어 있다. 改訂 追加된 「規則 135F(前規則 137) : 挿圖表示(Illustration statement)」에서는 挿圖者名이 包含된 挿圖物의 表示는 挿圖者名이 規則 132B에 明示된 基本 出處에 나타난 것이면 記入하기는 하나 이를 補助著者表示 처럼 取扱하며, 이에 關한 것은 規則 134D를 參照하도록 했으며, 挿圖事項이 그 著書의 全版(all edition)이 아니고 該當版本에만 關係되어 있을 境遇에는 規則135D의 規定에 따라 記入하도록 指示했으며 아울러 挿圖表示의 目錄上의 記入 順序에 關해서도 言及되어 있다. 「規則 135G(前規則 136) : 卷數表示(Statement of the number of volumes)」는 한 著書의 卷數表示가 그 著書의 對照事項에 表示된 것과 다른 境遇에 目錄記入하는 順序에 關한 規定으로, 이러한 境遇 卷數表示는 標題紙에 나타난 대로 版次範圍의 마지막 要素로 記入되나, 版次表示가 없을 境遇에는 書名著者表示範圍의 마지막 要素로 記入된다는 規定이 여기에 追加되어 있다.

4. 出版範圍(Imprint area)

改訂된 「規則 136(前規則 138)」의 出版範圍에 關한 序文에는 出版事項을 記入하는 理由中 在來的인 觀念, 即 地域的 見解, 出版者의 編見과 見解, 著書의 主題나 裝幀(physical make-up)의 質 그리고 出版年度의 適時性에 關한 前規則의 文章이 削除되어 있다.

「規則 136A(前規則138A, D): 要素의 順序와 出處(Order and source of elements)」의 改訂된 規則에 새로 追加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規則132B에 明示된 基本出處 以外의 出處에서 나온 出版事項은 角括弧內에 表示된다; 2. 原出版事項 資料가 他出版事項資料가 적힌 레이블(label)로 덮였어도 識別 할 수만 있다면 記入해야 하며 레이블에 있는 出版事項資

料는 註記에 記入한다; 3. 原出版事項을 識別 할 수 없으면 레이블의 資料를 出版範圍에 記入하며 出處는 註記에 적는다. 「規則136B: 句讀點」은 出版事項에 있어서의 所定の 句讀點에 関한 새로운 規則이다. 「規則136C(前規則138B)」는 一個 以上の 出版地 및 出版社의 著書(Works with more than one place and publisher)에 関한 것으로 이 中에서 改訂된 「規則136C 3(前規則138B 3)」은 外國出版物에 外國出版事項 以外에 美國의 市 혹은 美國의 出版社가 記載 되었으면 이를 添加하도록 한 前規則에 比較해, 美國의 市나 美國의 出版社라는 用語 代身에 目錄機関이 屬해 있는 國家의 市나 出版社로 變更 했는데, 이것은 AACR의 利用範圍를 國際의 으로 넓히려고 한 試圖라고 볼 수 있다. 「規則136D(前規則138G)」는 複寫 再版(Photographically reproduced reprint) 및 影印版에 関한 것으로, 原 標題紙만 있거나 또는 原標題紙에 再版 出版社의 出版事項이 添加 되었으면 再版 또는 影印版 出版社의 出版事項을 出版範圍에 記入 하고 原出版 事項은 註記에 記入한다는 것이다. 이 規則은 原標題紙의 出版事項을 記載한 다음 再版出版社의 出版事項을 角括弧內에 表示한다는 前規則과 比較하면 出版事項 記入의 優先 順位가 바뀌어진 것이다. 「規則136E(前規則138F)」는 假想的 出版事項(Fictitious imprints)을 取扱하는 規則으로, 前規則에서는 假想的인 出版事項을 出版範圍에 먼저 記入한 다음 實際出版 事項을 角括弧內에 記入 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實際出版事項을 알 境遇 이를 出版範圍에 記入하고 만일 모를 境遇에는 “sine loco”의 略語 “s. l.”과 “sine nomine”의 略語 “s. n.”을 角括弧속에 記入하며 假想的인 出版 事項은 註記에 記入하도록 되어 있다.

例. 前規則: Paris, Impr. Vincent, 1798 [i. e. Bruxelles, Moens, 1883]
改訂된 規則: [Bruxelles: Moens, 1883]

Fictitious imprint on t. p.: Paris: Impr. Vincent, 1798.

出版地(Place of publication)에 関한 規則中 「規則137A(前規則139A): 出版地未詳(Place unknown)」에서는 出版地를 알 수 없을 境遇, 前規則에서는 編輯事務室의 位置, 또는 그 著書를 發行하는 研究機関이나 協會本部의 所在地를 出版事項에 記入하고, 印刷地도 美詳인 境遇에는 “n. p.” (no

place의 略字)를 角括弧속에 記入하였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推定出版地 (Probable place of publication)를 角括弧속에 記入하며, 推定出版地가 없을 境遇 “s.l.”(sine loco의 略字)을 角括弧속에 記入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지막 方法으로 印刷地를 推定出版地로 使用한다는 前規則은 改訂版에서 削除되어 있다. 「規則137C(前規則139D): 短縮된 地名(Abbreviated place name)」에 追加된 事項은 完全한 形式의 出版地名이 序頭紙面(Preliminaries)이나 版權紙(Colophon)에 적혀 있으면 標題紙의 短縮地名을 代身하여 記入하나, 이것이 적혀 있지 않을 境遇에는 角括弧内に 完全한 地名을 補記한다는 規定이다. 前規則139B에서 多數出版地(Various places)를 略語 “V. P.”로 表示하는 規則은 改訂版에서 省略되어 있다.

「規則138A(前規則140A)」는 出版社(publisher)에 關한 規則으로 出版社 表示는 出版社를 識別 하는데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可能한限 短縮 한다는 一般規定에 改訂版은 國際水準이라는 語句를 追加 하므로서 AACR의 使用 範圍를 國際水準으로 넓히고자 하는 意圖를 알 수 있다. 또한 一般規則에 追加된 事項은 出版社名未詳인 境遇에는 “s. n.”(sine nomine의 略字)를 角括弧속에 記入 한다는 規定이다. 「規則138B(前規則140B): 出版社 表示中 重要한 部分(Essential parts of the publisher statement)」에서 改訂된 「規則138B 2(前規則140B 2 - 3)」에서는 어떤 出版物에 對한 責任이 分離되어 있을때, 卽 한 사람은 編輯責任만 그리고 다른 사람은 發行責任만이 있거나 또는 한 사람은 發行者이고 다른 사람은 補給者(distributor)인 境遇, 責任을 分擔하는 兩者名을 모두 出版社表示에 記入한다는 것이 明示되어 있다. 그리고 補給者가 여러名 記載되어 있을 境遇, 目錄機關이 屬해 있는 나라(the country of the cataloging agency)内の 補給者名이 記入된다는 規則은 前規則에서의 美國이라는 말을 改訂規則에서는 目錄機關이 屬해 있는 나라로 改稱한 것 以外에 原則에는 變更이 없다. 그리고 「規則138B 4(前規則140B 8)」에서는 出版社名이 1個國語 以上の 言語로 되었을 境遇, 出版社名 記入의 優先順位는 本書名과 同一한 言語로 된 出版社名이고 다음이 첫번째로 적힌 出版社名의 順으로 選定하도록 改訂되어 있다. 前規則에서는 本文이 數個國語로 된 著者의 書名을 決定하는

規則에 의하여 本文 言語의 優勢性 如何에 따라 決定했다. 前規則140B5와 140B6에서 表示된 政府印刷業者의 公的인 地位 또는 商業印刷業者의 公的인 機能을 表示하는 語句와 著書가 私的으로 出版되었다는 表示는 改訂版에서는 削除되었다. 「規則138C(前規則140C) : 出版社表示에서 不必要한 部分(Unnecessary parts of the publisher statement)」에 關한 規則은 前規則의 項目의 順序만 몇개바뀐것 以外는 變更된 것이 없다. 「規則138D(前規則140D)」는 發行者가 著者(publisher as author)인 境遇에 關한 것으로 前規則에서는 著書의 基本記入이 出版社名으로 되었을 境遇 出版社를 出版事項에서 省略하였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出版社名이 書名과 著者表示範圍에 表示되어 있으면 略語나 定冠詞 다음에 屬語(generic word)로 된 이름을 出版事項에 記入하며, 出版社가 團體의 從屬機關일 境遇 可能하면 從屬機關의 屬名만 記入하도록 規定 하였는데 이때는 角括弧를 使用치 않는다고 했다.

「規則139(前規則141) : 年代(Date)」. 出版年代에 關한 規則은 改訂版에서 많이 改訂되었다. 規則139A의 一般規則에 依하면 年代는 該版의 初版印刷(first impression)의 出版年代라고 規定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出版社의 再刷版(reprint edition)인 境遇에도 再刷版의 初版印刷 年代가 出版年代가 된다. 改訂된 規則中 注視 할만한 變化는 出版年代가 情報의 基本 出處인 標題紙, 序頭紙面 혹은 版權紙에서 나온 것이면 角括弧 없이 記入한다고 規定 하므로서 表紙의 年代도 이제는 角括弧 없이 記入할 수 있게 되었다. 前規則에서는 後刷版(later impression)이나 再刷版(reprint edition)의 標題紙에 原出版年代만 表示되어 있을 境遇, 再刷版의 年代를 原出版年代 다음에 角括弧 안에 덧붙였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後刷版의 年代는 後刷版이 內容上 變更 되어서 後刷版을 區別할 必要가 있을 때 標題紙의 出版年代 다음에 角括弧 없이 後刷版의 年代와 Printing 이라는 單語를 같이 記入한다(例 : 1970, 1973 printing). 그리고 初版의 出版年代를 確認 할 수 없을 境遇에는 c字(=copyright)를 붙인 版權年代 또는 印刷年代를 使用하나, 兩者가 使用될 境遇의 記入順은 版權年代 다음 印刷年代를 出版事項에 記入한다고 規定 했다. 前規則은 版權年代가 標題紙의 (出

版 혹은 印刷)年代와 같이 않을 境遇에는 兩年代를 모두 記載하되, 標題紙年代를 먼저 記入한 다음 版權年代를 記入 하도록 했다. 「規則 139B (前規則 141B) : 多卷本 著書(Multiple volume works)」에서는 한 권 以上으로 된 著書의 出版年代를 記入하는 形式이 變更되었다. 即, 同一世紀內的 包括的인 出版年代를 記入하는데 있어서 前規則은 두번째 年代를 2單位 숫자 (two digits : 例. 1923-30)로 記入했으나 改訂版에서는 4單位숫자(例 : 1923-1930)로 記入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卷의 出版年代가 出版事項의 包括的인 出版年代와 一致하지 않을 境遇의 不規則性을 表示하는 前規則의 規定이 改訂版에서는 削除되었다. 「規則 139C (前規則 141C) : 加除式本 (Loose-leaf volumes and works published in parts)」은 根本的으로 變更되지 않았으나, 加除式本은 새로운 標題가 나올때마다 出版事項의 年代를 修正한다는 規定은 좋으나, 實際로는 目錄者들이 年代 記入을 完結시킬 때 包括的인 年代를 記入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새 標題紙의 年代를 카드에 좀처럼 修正하지 않는다. 그 理由는 새로운 標題紙의 年代가 最近年代라 할지라도 처음 記載된 年代가 重要한 것이기 때문이다. 「規則 139E (前規則 141E)」는 年代表示銘 (Chronograms)에 관한 것으로, 改訂된 規則은 年代를 아라비아숫자로 出版事項에 記入 할 때 角括弧를 使用한다는 것 以外는 前規則과 다름 없다.

「規則 140 (前規則 138C) : 印刷者의 出版事項(printer's imprint)」, 出版地와 出版社가 未詳인 境遇에 代身 印刷地와 印刷者名을 記入한다는 規定은 前規則과 같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出版範圍에 “s. l. ”, “s. n. ”과 出版年代를 쓴 다음 印刷地와 印刷者名을 記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規則 138B (前規則 140B 5)」의 出版社表示事項에서 削除된 規則, 即, 政府印刷業者의 公的인 地位 또는 商業印刷業者의 公的인 機能을 表示하는 語句를 出版社 表示에 包含시킨 前規則을 改訂된 規則에서는 印刷者의 出版事項에 包含시켜 記入하도록 追加되었다.

5. 對照範圍 (Collation area)

規則 141 (前規則 142)의 序文에 보면 對照事項은 著書外形 (the physical

work)에 대한 目錄者의 記述로서, 前規則과는 달리 對照事項을 이루고 있는 項目中 同伴資料가 包含되어 있는 點이다. 對照範圍의 內容을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A. 句讀點(punctuation)「規則141A」. 改訂된 規則에서 特히 注視할 點은 對照事項에서 句讀點이 많이 달라진 點으로, 對照範圍의 句讀點의 例示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卷數 혹은 페이지: 插圖表示; 크기 & 同伴資料 -- (叢書).

B. 單行本著書의 範圍(Extent of text in one volume) 「規則141B 前規則142A」. 페이지 表示는 되어 있으나 張數表示는 없는 著書는 페이지로만 記述한다는 規則에 있어서는 前規則과 같다. 著書의 本文앞에 있는 序頭紙面의 張(preliminary leaves)數가 表示되어 있지않을 境遇, 現代著書의 序頭紙面의 張數表示는 할 必要가 없으나, 1800年 以前에 印刷된 著書의 張數는 舊制度대로 prelim. l로 表示하므로써 그 著書의 量을 正確히 模寫 할 수 있다면 그대로 使用함이 좋을 것이다. 「規則141Bb(前規則142A16)」에 依하면 페이지나 張數가 (숫자가 아니고) 알파벳文字로 表示된 著書를 記述할때, 前規則은 페이지나 張數를 文字뒤에 記入 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文字앞에 記入 했다. 또한 添加된 「規則141Bld」에 依하면 圖版(plate)의 張數는 페이지表示 다음에 記入하며, 卷頭畫(frontispiece)까지도 圖版의 張으로 取扱하므로써 圖版은 對照事項記入의 位置上 插圖表示에서 페이지表示 쪽으로 옮겨 졌다(例: xvi, 246p., 24 leaves of plates). 「規則141Ble(前規則142Ald)」에 依하면 未完成된 著書 또는 한著書의 部分만을 記入할때 包括的인 페이지나 張數로서 表示해주는 原則에는 變함이 없으나, 前規則에서는 “p.”나 “leaves”를 페이지나 張數뒤에 表示했으나(例: 89-149p. 56-75 leaves) 改訂된 規則에서는 앞에 表示했다(例: p. 89-149. leaves 56-75). 「規則141B 2(前規則142A 2): 페이지가 없는 著書(Unpagged works)」에 依하면 面數가 表示되어 있지 않는 單行本의 包括的인 面數를 쉽게 把握 할 수 없을때, 前規則에서는 이를 lv.(unpagged)라고 記載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페이지나 張이 100面 또는 100面 以下일 境遇 張數를 세어서 角括弧안에 記入하며(例: [87] p. (또는

leaves)), 100面 以上일 境遇에는 세거나 또는 略字 “ca.” 다음 50의 倍數로 計算하여 記入 하도록 되었다(例: ca. 500 p. (또는 leaves)). 廣告物을 除外한 著書의 페이지 數는 空白 페이지나 張도 包含 한다고 했다.

「規則141B 3 a-b(前規則142A 3): 複雜하거나 또는 不規則한 페이지 表示 (Complicated or irregular paging)」. 이러한 著書를 記述할때 前規則에서는 著書의 한部分 또는 그以上의 主된 部分의 面數를 記載하고 나머지 部分은 多樣하게 (variously) 面數가 表示 되었거나 또는 全연 面數表示가 안됐을 境遇, 多樣하게 表示된 面數와 全연 表示되지 않은 部分의 總面數를 角括弧內에 記載하거나(例: xiv, 226, [44] p.) 또는 lv. (various pagings)나 또는 1 portfolio로 表示 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面數가 매겨진 部分의 數에 따라 記入形式을 決定했다. 即 面數가 매겨진 主된 部分이 셋 以下일 境遇, 前述한 前規則의 두가지 方式中 첫번 形式(例: xiv, 226, [44] p.)과 같이 記入 하나, 面數가 매겨진 部分이 셋 以上일 境遇 各部分의 마지막 페이지나 章에 積된 숫자를 合算하여 總 숫자를 記入한 다음 “in various pagings” 또는 “in various foliation”라고 記入 하도록 改訂 하므로서(例: 968 p. in various pagings)各部分의 面數를 各各 따로 表示 하지 않도록 했다. 「規則141B 3 C(前規則142A 3)」은 한卷으로된 加除式 出版物(loose-leaf publication)에 關한 規則으로서, 이에 關해 前規則에서는 페이지를 쉽게 알 수 있어도 간단히 “lv. (loose-leaf)”라고 表示해 주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loose-leaf”이라는 單語를 빼고 다만 “lv.”이라고만 記入하거나 또는 여러卷으로 出版될것이 明白하면 卷數表示는 남겨 놓고 最新資料를 添加하기 爲해 加除式으로 된 出版物이라는 註記 “Loose-leaf for updating”을 해주도록 變更되었다. 添加된 「規則141B11」은 著書의 本文 다음 廣告部分이 繼續해서 面數가 매겨졌을 境遇, 對照事項에 本文의 페이지 다음 總括的인 廣告面數를 括弧속에 記入해 주도록 規定되었다. 「規則141B12(前規則142A11): 不完全本 (In-complete copies)」에 있어서 前規則은 不完全本을 表示할때 그책의 所藏圖書館名을 表示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所藏圖書館名은 적지않고 不完全本이라고만 表示해 주었다.

C. 한卷 以上으로된 圖書의範圍(Extent of text in more than one volume) 「規則141C(前規則142B)」中的 規則141C 5 (前規則142B 5) 는 變更되지 않았으나, 對照事項에서 “volume”이라는 表示 以外에 한卷 以上이나 또는 分冊으로된 著書를 記述하는데 使用하는 用語를 正確히 規定해 놓으므로 目錄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項目들이다. (loose-leaf 라는 用語는 規則141B 3 C에서 다루어 졌으므로 여기서 削除 되었다). 「規則141C 6」은 非正常的인 体裁(Unusual format)로 된 出版物에 對한 記述로서 이러한 出版物을 適切히 描寫하는 用語를 使用토록 하기爲해 添加된 規則이다.

D. 插圖物(Illustrative matter)에 關한 「規則141D 1 (前規則142C1a)」에서는 插圖物의 略語 “illus.”가 改訂된 規則에서는 “ill.”로 바뀌었고, 그 外 目錄에 記入하는 特有的 形態의 插圖物의 目錄에서 圖表(Charts)와 圖版(Plates) (圖版에 關해서는 規則141B1d에서 다루어 졌다)이 削除되고, 그대신 圖形(diagrams)과 圖式(graphs)이 添加되었다. 이러한 特殊的 插圖物에 關한 用語들은 모든 種類의 插圖物을 뜻하는 “ill.”와 같이 使用할 境遇에는 “ill.”다음에 記入한다. 脚註13에 “ill.”라는 用語 使用에 對한 美議會圖書館의 政策에 依하면, 插圖類가 그 著書의 範圍에 屬하는 것일 때 “ill.”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지만, 著書에 한種類의 插圖類만 包含되어 있으면 特定的 用語를 使用한다고 했다. 改訂된 規則에서는 또한 插圖物이 標題紙나 小插圖物로 限定된 것이면, 그 插圖物은 大개 無視해 버린다고 덧붙였다. (卷頭畫(frontispiece)는 規則141B1d에서 다루어 졌으므로 여기서 削除되었다.) 「規則141D1b(前規則142C1b)」에서는 圖表(tables)가 冊의 봉투(pockets)나 書類牒(portfolios) 등과 같은데에 들어 있어서 特別히 表示해야 할 境遇 以外는 圖書를 本文으로 看做하므로 對照事項에 記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著書가 全部 또는 大部分이 圖書로 構成되어 있을 境遇, 이와같은 事實이 書名같은데 表示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註記에 明示해 주어야 한다(例: Chiefly tables). 「規則141D 2 (前規則142C 2) : 有色插圖物(Colored illustrative matter)」에서는 前規則의 例示에서 括弧속의 “part col.”라는 文句가 改訂된 規則에서는 “some col.”로

變更되었으며, 또한 脚註14에는 色彩가 著書에 特別히 重要한 境遇에만 有色插圖物이라는 表示를 한다는 美議會圖書館의 政策이 說明되어 있다. 「規則141D 4 (前規則142C 4) : 記錄된 插圖數 (Number of illustrations recorded)」에서는 圖版의 數에 關한 事項이 規則141Bd에 包含되었으므로 여기서는 除去되었다. 「規則141D 7 (前規則142C 7) : 本文이 없거나 또는 적은 插圖 (Illustrations with little or no text)」에 依하면 著書가 全部 또는 大部分이 插圖物로 構成되어 있을 境遇, 前規則에서는 面數다음 插圖事項을 같이 붙여서 表示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面數와 插圖事項을 對照 事項에서 콜론(:)으로 分離하여 表示했다.

E. 크기(size)에 關한 「規則141E(前規則142D)」에서는 한 帙의 著書들의 크기가 2 cm 또는 以上の 差異가 있을 境遇, 差異가 나는 卷數를 區別하여 括弧속에 表示 해주는 事項이 改訂된 規則에서는 削除되었으나, 體裁가 非正常的인 著書의 測定法에 關한 規則141E 6이 添加 된것 以外는 前規則과 變함이 없다.

F. 同伴資料(Accompanying materials)에 關한 「規則141F(前規則142E)」의 序文에 依하면 同伴資料에 屬하는 資料의 範圍는 細密한 記述을 할 만큼 重要치 않는 解答書(answer books), 教師便覽(teacher's manual) 그리고 또는 한帙에 包含된 다른卷과 連續的으로 番號가 매겨지지 않은 地圖나 圖版의 書類牒(portfolios) 그리고 著書表紙의 봉투속에 들어 있는 視聽覺資料等으로 規定되어 있다. 「規則141F」에서 同伴資料는 資料의 性質을 나타내는 適切한 單語나 文句로서 表示한다는 規定이 添加되었다. 前規則에서는 基本著書의 對照事項 다음에 “and”를 使用하였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略字 “&”를 使用했다. 「規則141F 2 (前規則142E1)」에 依하면 同伴資料에 關한 더 詳細한 記述이 必要하면 出版物의 範圍와 插圖物에 關한 表示는 特徵을 나타내는 用語 다음에 所定의 句讀點을 使用하여 括弧속에 記入하며, 同伴資料의 크기가 基本著書의 크기와 같을때는 省略하나 다른 境遇에는 括弧속에 同伴資料의 記述 다음에 記入한다고 했다(例 : 271 p. : ill ; 21cm. & atlas(37p., 19 leaves of plates : 19 col maps ; 37cm.). 同伴資料가 視聽覺資料인 境遇, 資料自体에 對한 記述은 A

A C R 12章(映畫와 필름스트립)과 14章(音盤)의 規定에 依하여 記入한다는 規則이 添加되었다.

6. 叢書範圍(Series area)

「規則142A(前規則143A)」中의 一般規則142A1(前規則143A1)에 依하면 叢書表示를 다른 出處에서 補記 하였을 境遇, 前規則에서는 그것을 圓括弧 代身에 角括弧內에 記載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圓括弧內에 角括弧를 써서 記入한다고 했다. 改訂된 規則에 依하면 他出版社에서 出版된 어떤 著書의 再版에 原出版社의 叢書가 言及되어 있을 境遇, 그 叢書事項을 註記에 記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冊의 겉표지(dust jackets)에 만 적인 叢書表示는 대체로 無視한다고 했다. 叢書名에 副書名(Subtitle)이 있을 境遇(識別에 必要치 않는限) 副書名을 省略 한다는 規則은 改訂되지 않았으나, 叢書名에 副書名을 包含시킬 境遇 콤마로서 叢書名과 副書名을 分離한다고 改訂版에 明示했다. 또한 改訂版에 依하면 叢書名이 한 言語나 文字 以上으로 表示되었을 境遇, 本書名의 言語나 文字와 一致하는 書名을 叢書範圍에 記入한다고 되었으나 脚註16에 依하면 國家目錄機關은 그 나라의 出版物인 境遇에는 어떤 言語나 文字로 된 것이라도 모든 同等叢書名을 記入해야 한다고 明示했다. 改訂版에 追加된 規則은 叢書事項에 國際標準連續刊行物番号(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ISSN)가 매겨졌으면 叢書範圍 마지막 項目에 ISSN을 적은다음 그 番号를 記入한다(例: University of Exeter. Agricultural Economics Unit. Reports; No. 195 ISSN 0305-5817). 脚註17에 依하면 美議會圖書館에서 가능한 限 ISSN 숫자의 單位를 하이픈으로 区分하여 目錄에 記入한다고 되어 있다.

「規則142A 2(前規則143A 2)」는 叢書範圍의 所定의 句讀點에 關한 規則으로서 改訂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變更되었다.

例: 前規則(총서명, 총서번호)

改訂規則(총서명; 총서번호)

前規則(총서명, 번호, 부총서명, 번호)

改訂規則(총서명; 번호:부총서명; 번호)

前規則(총서명, 부총서명, 번호)

改訂規則(총서명:부총서명; 번호)

「規則142E(前規則143E):叢書表示에서의 著者(Author in series statement)」中の「規則142E1(前規則143E1)」에 依하면 前規則에서는 叢書의 著者が 目錄하려는 各卷의 著者和 同人인 境遇와 各卷의 著者和 다른者인 境遇를 区分해서 規定한 反面, 改訂된 規則에서는 叢書名이 多卷本 単行本의 書名인 境遇와 連續刊行物의 書名인 境遇를 区分해서 規定 했다. 만 일 叢書名이 多卷本으로 된 巢行本(multi-volume monograph)의 書名이며 叢書의 著者が 各卷의 著者和 同一하고 그著者名이 叢書名의 一部로 되어 있지 않는 限 그著者名을 適切한 所有代名詞(His, Her, Their, Its)로 代置 하여 叢書名 앞에 記入한다. 그러나 「規則142E(前規則143E 2)」에서는 萬一 叢書名이 連續刊行物의 書名이며 또한 叢書의 著者名이 叢書名의 必須部分일 境遇, 그著者名을 叢書表示에 包含 시킨다고 한다. 이때 叢書名 記入에 關한 規定은 叢書名이 連續刊行物이므로 AACR規則162에 따라야 할 것이다. 「規則142E 3(前規則143E 2 b)」에 依하면, 屬名(generic term)으로만 構成된 叢書名이 連續刊行物의 書名일 境遇, 記入 順序는 그叢書名이 먼저 오고 그다음 하이픈兩쪽에 빈칸을 두고 著者が 表示 되도록 改訂되었다. 例:前規則(Australia,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Bulletin no. 216). 改訂된 規則(Bulletin -- Commonwealth of Australia,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no. 229). 또한 著者表示는 團體의 職位가 包含되었을 境遇, 其中 著者를 識別하는데 不必要한 部分을 省略하고 著書에 表示된 대로 記入해야하며 團體職位의 部分은 콤마로서 分離하여 記錄하도록 改訂되었다. 「規則142F(前規則143F):하나 以上の 叢書에 屬해 있는 著書(Works in more than one series)」中の 「規則142F1(前規則143F 1)」에 依하면, 叢書로서의 本質이 分明한 叢書名과 即時 分別 할 수 없는 叢書名을 記入 할 때는 後者를 첫번 位置에 記入한다는 規定과, 副叢書의 著者和 基本叢書의 著者가 相異할 때는 副叢書는 두번째 叢書로 取扱한다는 項目이 改訂版에서는

省略된 것 以外는 初期에 改訂된 規則과 別 다름이 없다. 다만 各叢書表 示에 있어서 前規則에서는 모든 項目이 한쌍의 括弧속에 全部 記入됐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各各 다른 括弧속에 記入 된 것이다.

7. 註記範圍 (Notes area)

「規則143A(前規則144A)」는 註記範圍에 関한 一般規則으로, 이 規則의 定義와 目的에서 記入의 公式화된 部分을 “說明하는 記入體(Body of the entry) 및 對照事項”이라는 前規則의 用語가 改訂된 規則에서는 削除되었다. 또한 著書의 本文다음에 오는 廣告部分과 其他 포켓 또는 Portfolios 에 들어 있는 同伴資料 註記에 関한 規則들도 削除된것은 이러한 事項들이 規則141B11, 141D 5 에 이미 包含되어 있어 重複을 避하기 為해서이다.

「規則143B(前規則144B, C)」는 註記의 範疇(Categories of notes) 에 関한 規則으로, 이 改訂된 規則에서는 註記의 範疇를 반드시 必要的 註記와 또한 重要하지만 必須的이 아닌 註記로 区分해 놓았다. 「規則143B1(前規則144B): 必須的인 註記(Indispensable notes)」中的 「規則143B1b」에는 著書의 著者에 関한 必須的인 情報를 提共하는 註記, 即 著書에 貢獻한 者의 이름을 註記해주는 事項이 添加되어 있으며, 「規則143B 2 (前規則144C)」인 重要하나 必須的이 아닌 註記(Important but not indispensable notes) 에는 單行本에 包含된 各 論文(a work)의 內容을 나타내는 註記에 있어서 前規則에는 書誌만 包含시켰으나 改訂된 規則에는 索引도 包含시켜 註記하도록 添加되어 있다. 著書의 內容, 範圍 및 種類(literary form)를 表示하기 為한 註記와 書名의 言語가 本文의 言語와 다른 境遇, 또는 本文에 쓰인 言語가 明確치 않을 境遇, 本文의 言語를 表示하는 註記事項(前規則144C 3)이 改訂版에서는 各各 規則143B2c와 規則143B2d로 나누어 다루어졌다.

「規則143C(前規則144D)」는 文体(Style)에 関한 것으로, 註記에 對한 固定形式(fixed forms)은 規則144-148(前規則145-149)에 提示되어 있는 것으로서, 規則143C에는 그밖의 必要的 事項에 對한 非公式的(informal) 註記形式이 다루어져 있다. 143C의 項目 1과 2의 順序가 改訂된 規則에서 바뀌어져서 目錄作成中인 著書 또는 他出處의 引用句는 目錄者의 英

語로 쓰인 陳述보다 먼저 表示되어 있다. 改訂된 規則143D 以下の 例示는 所定の 註記形式이라기 보다 目錄者의 語法에 對한 提示라는 것을 덧붙였다. 非公式的인 註記를 記入 할 때 目錄者가 作成하는 構文의 單語나 綴字法, 그리고 略式學位名(degree abbreviations)에 對해서 前規則은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를 典據로 삼는다고 했으나, 改訂版에서는 美議會圖書館의 境遇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의 最近版을 典據로 삼는다고 變更한 것은, 隨時로 Webster 辭典의 改訂版이 나올 때마다 AACR 規則을 바꿀 수 없으므로 좀더 融通性 있게 해 놓았으며, 또한 綴字法에 對한 典據는 英語일 境遇에만 適用되므로 AACR의 世界的인 利用을 爲해서는 英語辭典만을 典據로 삼을 수 없으므로 Webster 辭典을 LC의 한 實例로서 脚註에 提示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出版事項을 包含하는 註記는 出版範圍에 關한 所定の 句讀點을 使用해야 하지만 그 以外의 註記인 境遇에도 所定の 句讀點 또는 在來式句讀點(Conventional punctuation)을 使用해도 된다는 事項이 改訂版에 追加되었다. 目錄作成者가 作成한 註記나 書誌關係를 적는 註記에는 非로마字로 記錄된 著者名이나 書名은 前規則에서는 非로마字 다음에 로마字를 括弧안에 表示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로마字로 表記된 것만 記入 하도록 變更되었다(例文은 規則143D 2 a와 前規則144E 2 c를 比較 參照 할 것.)

「規則143D(前規則144E)」는 註記順序(Order)에 關한 것으로서, 여기에 表示되어 있는 註記形式은 註記에 關한 有用한 實例들이다. 慣例的으로 使用하는 註記의 順序에서 公式化된 記述要素에 適用하는 註記를 記入하는 規則이 前規則에서는 註記順序에서 첫번째 였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세 번째로 바뀌어 졌으며 또한 分出註記(Analytical note)가 첫번째 順序로 追加 되었다. 書誌的인 歷史를 表示하는 註記는 前規則에서는 註記順序에서 두번째 였으나 改訂版에서는 書誌的인 歷史를 表示하는 註記中 原書名 註記만 두번째 順序로 되고 나머지 註記는 네번째 順序인 同著書의 다른 版과의 書誌的 關係를 記錄하는 註記로 나누어 졌다. 中 「規則143D 2 (前規則144E 2)」인 原書名註記 內의 順序도 다음과 같이 變更 되었다: (1) 翻譯書의 原書名, (2) 同一語異書名으로 再發行된 著書의 原書名 혹은 最

初書名, (3) 同一語異書名으로 同時에 出版 되었을 境遇의 統一書名, (4) 改訂版 혹은 最新版의 書名, (5) 相異한 言語와 相異한 書名으로 同時에 出版된 著書의 統一書名으로 採擇된 書名. 「規則143D(前規則144E 1)」의 세 번째 註記「規則(143D 3)」는 公式的(formalized)인 記述要素에 關聯된 前規則의 첫 번째 註記로, 標題紙語에 著書의 言語가 나타나 있지 않을 境遇, 그 著書의 言語는 恒常 註記되어야 한다는 規定이 添加되었으며, 또한 前規則의 副書名에 關한 註記事項을 新規則에서는 其他書名과 書名情報까지 包含시켜 範圍를 넓혔다. 「規則143D 3 e(前規則144E1e)」에는 私版(Privately printed) 註記가 添加되었다. 「規則143D 4 b(前規則144E 2 g)」는 續編(sequel)에 關한 註記로, 改訂된 規則에서는 文芸著書(Works of the imagination)인 境遇에 關係(relationship)를 나타내기 爲해 續編이란 單語를 使用하며, 其他 著書인 境遇에는 “Continues”나 “Continued by”라는 用語를 使用한다는 規定이 添加되어 있다. 「規則143D 4 C(前規則144E 2 h)」에는 再版으로 發行된 著書의 原版에 關한 情報의 註記에 原版의 出版社, 出版年代 叢書를 包含한다는 規定이 添加되어 있다. 「規則143D 4 e」는 影印本(Facsimile editions)에 關한 것으로 影印本에 提供된 陳述은 原著書에 提供된 陳述과 뚜렷이 區別되어야 하며, 原著書의 實際形態(physical form)에 關한 陳述이 必要할 때는 이를 影印本의 註記에 包含하도록 되어 있다.

「規則144 - 148(前規則145 - 149)」에는 一定한 註記形式의 例示가 提示되어 있다. 「規則144(前規則145)」는 書名머리註記(At head of title note)에 關한 것으로서, 改訂版에서는 標目으로 使用되지 않은 團體의 附屬機關名에 關한 註記인 前規則145b가 省略됐다. 그리고 또한 書名머리 註記는 分析註記, 原書名註記, 또는 書名의 出處를 表示하는 註記가 必要하지 않는 限 一般적으로 첫 번째 註記로 表示한다는 規定이 添加되어 있다.

「規則145(前規則146)」는 合本著書에 關한 註記(Notes of works bound together)로서, 이 中 同一卷內의 다른 著者에 對한 書誌引用 形式에 關한 「規則145E(前規則146C)」가 改訂版에서는 다음과 같이 改訂되었다. 合本著書의 註記에서 著者名은 目錄記入 順序대로 하나 著者의 이름(forenames)은 이름字의 數와 關係없이 머릿글자로 表示하며 改訂版

에는 略書名뿐만 아니라 統一書名이 있을 境遇, 統一書名도 使用 할 수 있게 했으며, 非로마자字로된 著書의 書誌引用은 로마字로만 記錄 했다.

「規則146 (前規則147) : 學位論文註記(Thesis note)」에서 一般規則146A (前規則147A)에 依하면, 前規則에서는 著書에 學位年度가 明示되어 있을 때 學位年度가 出版年度보다 2年내지 2年以上 먼저인 境遇에만 學位年度가 記入되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年限의 制限없이 學位年度가 出版年度와 다를 때는 學位年度를 學校名 다음에 記入하도록 改訂되었다. 「規則146B (前規則147B) : 學位論文的 表示(Designation of the thesis)」에 依하면 前規則에서는 學位論文 表示에 “thesis”라는 用語는 美國內 學校의 學位論文에만 使用하고 外國學位는 著書에 쓰여진 用語를 使用했으나, 改訂版에서는 “thesis”라는 用語를 모든 學位論文에 使用 하도록 했다. 1949년에 出版된 LC規則의 “Theses without thesis statement”項目이 前規則에서는 削除되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公式的인 論文表示(thesis statement)가 없는 著書라도 著者の論文으로 提示된 것이면 註記로 이 事實을 記錄 해주며, 論文表示가 著書에 添加된 境遇에는 論文表示의 性質을 註記해 주도록 規定되었다. (例. Thesis statement stamped on cover). 「規則146C (前規則147C) : 學位(the degree)」에서 學位의 略字에 對한 典據를 前規則에서는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또는 *Who's Who in America* 또는 學位授與機關의 要覽에 依하였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學位授與機關의 要覽과 適切한 參考文獻에 依한다고 變更 되었다. 그러나 美議會圖書館에서는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의 最新版과 *Who's Who in America*를 典拠로 使用 한다고 脚註 24에 明示되어 있다. 「規則146D (前規則147D) : 學校(the institution)에서 學位를 授與하는 學校名을 簡略하게 表示하기 爲해서 改訂된 規則에서는 目錄의 著者標目으로 採擇된 形式에서 廣範圍한 地理的 單位名은 省略할 것을 덧붙였다. (例. 前規則: Promotionsarbeit-Eidgenö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ürich. 改訂된 規則: Thesis -- Eidgenö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規則148 (前規則149) : 目次註記(Contents note)」의 改訂된 規則에서는

非公式目次註記와 公式目次註記로 나누어져 있다. 目次註記記入 25項目까지 記入하는 上位限界를 前規則은 記念論文集(Festschriften) 및 그와 類似的한 出版物의 內容註記에만 制限 하였으나 改訂版에서는 目次註記가 不必要한 著書를 除外한 모든 著書의 目次註記를 記入하는데도 適用시켰다. 또한 改訂된 規則에서는 合集의 目次는 記念論文集의 範疇에 屬하지 않는限 目次註記는 一般的으로 하지 않는다는 事項이 追加 되어 있다. 「規則148A1 (前規則149A4)」에서 非公式目次註記는 著書中에서 明示 해야 할 選定項目에 適用되는 것으로 이에 該當하는 種類中 改訂版에서는 discographies, filmographies, 그리고 索引 및 正誤表(errata slip)를 包含 시켰으나 記入 할 수 있는 註記의 數를 3個 以下로 制限했다. 그리고 著書의 部分으로 印刷되지 않은 正誤表는 恒常 註記해 주는 規則이 追加되었다. 非公式目次註記는 公式目次註記가 必要 없는 限 마지막 註記로 記入된다. 「規則148B4 (前規則149C4)」는 公式目次註記에 關한 것으로 여러著者の 著書를 目次에 列擧할 때 前規則에서는 著者名을 倒置하지 않고 書名다음에 記入했으나 改訂된 規則은 倒置된 著者名을 書名앞에 記入했다(例. 前規則: Introduction, by H.H. Brinton. 改訂된 規則: Brinton, H. H. Introduction). 記入 選定이 問題가 되는 項目은 目錄者가 AACR 1章規則에 따르지 않고 目次註記의 出處의 用語에 依해 主著者로 看做된 이름을 選擇하도록 提示했으며, 이름 다음에 “ed.”나 “comp.”는 省略한다는 規定이 添加되어 있다. 그리고 “et al.”을 補充할 때는 角括弧없이 使用하나, 卷數가 매겨지지 않은 著書를 表示할 때는 角括弧를 使用하도록 되어 있다.

8. 國際標準圖書番號範圍 (the ISBN area)

規則149는 新規則으로 ISBN은⁴⁾ 註記事項의 마지막 項目으로 記入된다. 相互다른 ISBN番號를 가진 多卷本著書일 境遇, 같은 行에 마침표

4) ISBN은 10段數로 構成되어 있다. 이 中의 첫번째 數는 나라, 地域, 言語 또는 其他 適切한 群을 表示하는 群表示이다. 앞으로 이 制度를 執行할 國際機關이 設立될 것이라고 한다.

로 区分하여 同時に 記入하거나 또는 各各 各行에 記入하도록 規定해 놓았다.

「規則150(前規則150): 書名로마字化註記(Title romanized note)」의 改訂된 規則에서는 이에 對한 LC의 實例는 脚註3을 参照하게 했다.

「規則151(前規則151): 副出記入指示(Tracing)」의 改訂된 規則에서는 著書에 必要한 모든 副出記入에 關해서 規則33을 参照하도록 提示했다. 前規則에서는 總書名副出提示가 括弧속에 記入되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로마數字로 書名副出指示 다음에 記入되었으며 總書表示에 包含된 ISSN(國際標準連續刊行物番号)은 總書記入에서 削除한다는 規定이 添加되었다. 改訂版은 또한 總書番号가 總書表示에 訂正되었을 때 總書의 正確한 番号를 表示하기 爲해 總書名副出指示에 總書를 빠짐없이 記入해야 한다고 脚註에 덧붙혔다. 그리고 總書名副出指示에서 總書名은 總書番号와 兩쪽에 빈칸을 둔 세미콜론으로 分離하여 놓았다.

Ⅲ. 特殊規則(Special rules)

「規則152(前規則152)」은 發行物(Issues) 및 写真複製(Photoreproductions)에 關한 規則으로, 前規則에서는—LC도 마찬가지로(脚註29參照)—複本으로 取扱된 發行物은 出版年の 差異 또는 出版者名形式의 變更以外的 差異點을 明示하여 記入한다고 했으나, 改訂版에서는 모든 差異點을 明示하여 記入한다고 했다. 前規則에서는 著者名標目의 反覆은 대쉬(2 ems의 길이)로 그리고 書名의 反覆은 둘째 대쉬(3 ems의 길이)로 表示했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著者名標目의 反覆은 긴 대쉬(4個의 하이픈)를 그리고 書名의 反覆은 두번째 긴 대쉬(6個의 하이픈)으로 表示하고, 著者名標目이 없을 境遇 一連의 긴 대쉬(6個의 하이픈)을 使用했다. 規則152B에는 대쉬標目에 있어서 可能한 所定の 句統點을 使用한다는 事項이 添附되었다. 兩規則의 대쉬記入을 使用한 例의 差異點은 다음과 같다. 前規則

— — — — 著者と 書名表示 — — — — — — — — —

— — — — — 同著者이나 書名이 다름을 表示 — — — — —

— — — — — 書名記入을 表示 — — — — —

「規則153 (前規則153): 拔萃本(Offprint)」과 「規則154 (前規則154): 分離著書本(Detached Copies of parts of works)」에 있어서 改訂된 點을 대쉬記入에 있어서 改訂規則152처럼 긴 大쉬(4個의 하이픈)와 둘째 긴 大쉬(6個의 하이픈)로 表示한다는 規定 뿐이다.

「規則155 (前規則155): 補遺, 索引(Supplements, indexes, etc.)」의 範圍(Scope)에는 繼續物(Continuations), 追錄(Supplements) 및 索引에 関한 記述은 改訂則에서 「規則19A: 從屬的 書名의 著書」를 参照하게 하므로 從屬的 書名의 著書는 그것과 關聯되는 著書와 같이 目錄한다는 것이 明示되어 있다. 前規則155A1은 「規則155A1: 著者로 記入된 主著者(Main work entered under author)」와 「規則155A2: 書名으로 記入된 主著書(Main work entered under title)」로 나누어져 取扱되었 으며, 「規則155A3」은 補遺의 書名에서 分離못 할 主著書名(Title of main work inseparable from title of supplement)에 関한 것으로서, 主著書名이 文法的으로 書名에서 分離할 수 없거나 또는 主著書名의 形式이 補遺의 書名에 包含되었을 境遇 쉽게 識別할 수 없을 境遇에는, 規則155A1을 따르도록 引訂되었다.

「規則156: 写真複製(Photoreproduction)」에 関한 記述은 AACR 第9章의 写真 및 그外의 複製(Photographic and other reproductions)에 関한 規則190-191을 改訂한 것이다. 序註에는 AACR 第9章의 序註와 規則191의 序註를 합쳐 改述되어 있다. 影印本(Facsimile editions)의 記述에 関한 規則은 規則133C2d, 136D, 143D4c, 143D4e₁₋₂에서 다루어 졌으므로 여기서는 省略되었다. 「規則156B」에서는 出版事項과 對照事項에 所定의 句統點을 使用 하도록 明示했다.

「規則156C」는 마이크로폼으로된 原本(Original editions in microform)에 関한 것으로, 이는 만일 写真複製된 著書의 페이지나 張數가 매겨져 있을 境遇에는 마이크로폼(microform)의 物質的 單位數(number of physical units)의 表示다음 括弧안에 페이지나 張數를 記入하도록

追加된 規則이다.

· 「規則157(前規則156) : 分出記入(Analytical entries)」의 定義와 範圍는 改訂되지 않았으며, 「規則157 A 1(前規則156 A 1)」은 特別한 標題紙가 있고 獨立된 面數가 있는 部分에 關한 것으로서, 前規則에는 이러한 著書의 部分은 括弧안의 總書位置에 記述되었고 그 外 分出記入의 境遇에는 出版事項다음 한칸 밑줄의 對照事項 位置에 括弧안에 記述하였으나, 改訂된 規則에서는 規則143 D 1에 依해 모든 分出記入註記는 첫 번째 註記가 되며, 記入形式은 “In”이라는 單語로 始作하나 이태리體 代身 고딕체로 印刷하거나 또는 밑줄을 치고 括弧없이 使用하는 點과 하나 以上の 이름은 첫째 大文字(initials)로 省略하는 點이 前規則과 다르다. 分出註記에는 所定の 句讀點 使用에 關한 規定을 明示하지 않았다.

結論

改訂된 規則이 前規則과 다른點은 書名에 關한 規則이 보다 詳細하고 明確하게 區分되어 있어서 複雜한 書名の 書誌記述을 하는데 目錄者에게 큰 도움을 끼친 것이며, 改訂된 規則에서는 美議會圖書館의 實例를 前規則과 달리 하나의 實例로서 脚註에 옮겨 記載 했으며, 또한 本文에서도 美議會圖書館이라고 指摘하는 代身 國家目錄機關이라고 改稱하므로써 AACR은 이제 實際目錄에서 實로 國際法과 같이 다루게 되었으며, ISBD(M)을 適用한 改訂版은 ISBD(M)과 더불어 目錄規則의 改善과 世界目錄規則의 統一에 크게 寄與하게 된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內容이 簡潔하고도 一貫性이 있어서 書誌記述에 크게 貢獻한 점 들이다.

이제 各 圖書館은 美議會圖書館 처럼 새 規則을 適用하는 政策⁵⁾을 樹立해야 하며, 앞으로 圖書館目錄에 採擇될 改訂規則을 現行 閱覽用目錄에 잘 統合시켜 閱覽者가 閱覽用目錄을 使用하기에 더 簡潔하고 쉬운 目錄을 作成하며, 아울러 改訂版의 規則을 漸次的으로 實際目錄에 適用하므로써 國內 뿐만아니라 外國과의 文獻情報交換을 通하여 圖書館 發展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것을 添加政策(Policy of “Superimposition”)이라고 하며 이에 對한 仔細한 것은 U. S.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Service Bulletin 79를 參照.

〈 参考文献 〉

1.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prepar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 [et al.]—North American text.—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7.
2. ——— *Chapter 6 : separately published monographs*/ prepar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 [et al.]—North American text.—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4.
3. Coe, D. Whitney, "A cataloger's guide to AACR Chapter 6 : separately published monographs, 1974, "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9 (2) Spring 1975, 101-120.
4. Anderson, Dorothy,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cataloging,"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7 (2) Spring 1973, 134-43.
5. Cole, Jim E., "AACR 6 : time for a review,"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9 (4) Fall 1975, 314-326.
6. Bakewell, K. G. B. *A manual of cataloguing practice*. Oxford: Pergamon, 197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ld and Revised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with Reference to Chapter 6 of Descriptive Cataloging

Soon—chung Hahn*

< Abstract >

In 1974 appeared the revision of Chapter 6 (which was then published as a separate monograph) of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 AACR). The revision is the sum result of the incorporation of the many changes put forth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 ISBD(M)) including the prescribed punctuation and also the reorganization and rearrangement, in much clearer and more accurate terms, of the previous 1967 AACR rul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hen to point out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1967 AACR rules and the revised 1974 AACR rules (for Chapter 6) for the benefit of the cataloger in her actual task of descriptive cataloging. The article consists of three parts: (1) an examination of the Appendices, I, III, and V of the revised rules, which are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revision of Chapter 6; (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even Areas of the revised General rules commonly used in descriptive cataloging; and (3) comparative analysis of Special rules.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